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74

발의연월일: 2021. 10. 26.

발 의 자:김정재·태영호·이철규

金炳旭・추경호・김영식

구자근 • 한무경 • 김기현

박대수 · 박대출 · 송언석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유치 등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등 의 요건을 일반기업 또는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유리하 게 운영 중임.

그런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일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규정하는 「상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벤처기업이 현행법의 유리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발행절차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별 발행 취지에 맞도록 행사요건을 정비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동법이 「상법」에 우선 적용

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을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 가능규모, 행사가격 등에 차등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조항을 신설함(안 제16조의3).
- 나. 주식매수선택권 정관 규정사항,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등 벤처기 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4).
- 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맞도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 상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정함(안 제16조의5).
- 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및 철회시 중기부에 신고하 도록 하고,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선택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함(안 제16조의6).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6조의3"을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3. 해당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부여하는 경우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 사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을 각각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으로 하고,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를 각각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로 하며,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항의 주 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 으로 본다.

-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 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제16조의3"을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6조의5"를 "제16조의8"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 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 2부터 제15조의11까지 및 제16 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 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 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 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 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 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 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15	5조(벤처	기유	널의	주	식교	환)	1
						- <u>제1</u>		
부	-터	제1	.6조	의67	<u> 가지</u>			
_								

개

정

아

② ~ ⑥ (현행과 같음)

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 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기 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 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 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 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3. 해당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주 식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부여 하는 경우는 회사의 발행주식

- 줄 주식의 종류와 수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과 행사 기간
-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 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 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 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 |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 권의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 권의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부여하는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 당 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 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

<삭 제>

<삭 제>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삭 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 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 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 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 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 할 수 있다.
-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 | <삭 제> 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 택권의 부여) ① 제16조의3제1 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 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뜻
- ②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 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 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

 의 종류와 수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 을 제16조3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신 설>

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2 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또는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 고 등)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 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 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 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 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 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 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부여・취소・행사, 그 밖에 필

제16조의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생략)

에 대한 특례) (생략)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 한 특례) (생 략)

-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 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 벤 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 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 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1. ~ 4. (생략)
 - 5. 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 6.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을 50 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 립한 행위

② (생 략)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6조의7(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현행 제16조의4와 같음) 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 에 대한 특례) (현행 제16조의5 와 같음)

> 한 특례) (현행 제16조의7과 같 음)

제16조의8(소셜벤처기업) (생 략)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현행 제16조의8과 같음)

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6. 제16조의8-----

② (현행과 같음)